

A central illustration featuring a man in a blue shirt holding up two globes, one with a keyhole. Surrounding him are various icons representing digital security: a padlock, a key, a magnifying glass over a padlock, a person at a laptop, a document with a checkmark, a folder, a password field with asterisks, and a person sitting on a box. The background is light blue with faint grid lines.

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관련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연계정보(CI)를 일괄 변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및 처리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환심사 진행

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 연계를 위해
연계정보(CI) 변환이 필요한 기관(법인)

1. 개별 법령의 **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**를 보유하여야 함
2. 개별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**고지업무 목적이 포함되어** 있어야 함
3. 주민등록번호 **처리 근거와 연계정보(CI) 변환 목적**(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등)이 일치해야 함

[공통서류] 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[추가서류] 변환 방식 및 분류에 따라 해당 서류 접수

모바일 전자고지

공통서류

① 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, ② 사업자등록증

추가서류

- 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
- ② 주민번호처리 유권해석자료
- ③ 전자고지(모바일통지)계약서
- ④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서

대용
마
이
데
이
터

공통서류

① 연계정보(CI) 변환신청서, ② 사업자등록증

추가서류

신용정보법 시행령

- 제5조 제2항(금융기관)
- 제18조의6 제4항(신용정보제공·이용자)
- 제5항(공공기관)
- 제21조 제2항(금융기관)에 따른 기관(법인)별 해당서류

본인확인기관*을 통해 접수된 기관 및 법인의 변환신청건을 대상으로 연계정보(CI) 변환심사 진행**

*본인확인기관: NICE평가정보(주), 서울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

****연계정보(C) 변화심사:** 외부 전문심사위원(3인 내외)을 구성하여 적정성 여부 심사



금융 마이데이터 변환 대상 기관 및 심사 제출 서류



구분

대상

제출서류

금융기관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2항)

은행, 금융지주회사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, 한국무역보험공사,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

금융투자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, 자금증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
보험회사

여신금융전문회사

- ① 연계정보 변환 신청서
- ② 사업자등록증

①+②+
금융투자업인가(허가)증

①+②+보험업등록증

①+②+여신금융업등록증

금융기관 등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)
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, 국채등록기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신용회복위원회, 근로복지공단,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엔지니어공제조합, 정리금융회사, 체신관서, 전기공사공제조합, 주택도시보증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장학재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서민금융진흥원, 자본재공제조합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유동화전문회사,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, 한국교직원공제회, 여객운수업 공제조합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제조합, 기업신용조회회사

대부업자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

- ① 연계정보 변환 신청서
- ② 사업자등록증

①+②+대부업등록증

①+②+온라인투자연계
금융업등록증

신용정보제공 이용자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6제4항)

전자금융업자,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,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, 겸영여신업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전기통신사업자(기간통신사업 등록)

- ① 연계정보 변환 신청서
- ② 사업자등록증

①+②+
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

공공기관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6제5항)

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공무원연금공단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근로복지공단, 신용회복위원회

- ① 연계정보 변환 신청서
- ② 사업자등록증